탄 원 서

피고인	정진팔	전 육군 중장 · 전 합동참모차장 · 계엄사 부사령관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2026고합486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탄원의 취지와 판단의 기준

2026년 공개보도에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이 다른 군 지휘부 인사들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2] 비상계엄 당시의 국회 기능 침해 의혹은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 개인의 책임은 직위나 다른 군인의 행동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령을 요청하거나 승인했는지, 당시 무엇을 보고받았는지, 후속 조치를 실제로 통제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구별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 지원 요청

군 징계자료를 인용한 보도에는 정진팔이 12월 3일 23시 22분경 계엄사 창설 준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제시됩니다. [4] 해당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 자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자료에 적힌 기술은 형사재판의 확정된 사실인정과 같지 않습니다. 요청의 정확한 문구, 수신자, 발신자의 권한, 실제 수행된 업무를 원문 통신·상황일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원 요청이라는 명칭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도 없고, 반대로 요청 한 건만으로 국헌문란 목적과 중요임무 수행이 모두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국회 의결 이후 병력 검토와 인식 시점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경 가결됐다고 적시합니다. [9]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는 그 이후 01시 03분부터 03시 18분 사이 제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3] 출동 가능 병력의 확인이 추가 투입 준비였는지, 상황 파악 또는 중단 검토였는지 원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의 객관적 시각, 피고인에게 의결 사실이 실제 보고된 시각, 검토 지시 및 철회 여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추가 투입을 인식하고 독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 역시 엄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4. 기관 단위 연락과 피고인 개인의 지시

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계엄과가 관련 기관과 연락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3] 기관의 전화 발신 기록은 정진팔 개인의 승인 또는 지시를 증명하는 출발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발신자·수신자·통화 내용·보고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합참 지휘통제실 현장 검증 관련 보도는 시설의 화면·동선에 관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지만,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거나 들었다는 결론은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8]

5. 중요임무종사의 법적 요건과 예비적 양형

형법 제87조는 국헌문란 목적 등의 폭동을 전제로 가담 형태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5] [6] 이 사건에서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행동의 실질적 중요성과 관련 목적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의 헌법 제77조 제5항과 당시 계엄법 제11조도 판단의 배경입니다. [10] [11]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도성과 재량, 실제 실행 여부, 중단·철회,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증된 사정을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개별 반영해 주십시오. [7]

6. 결어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해 명령 원문과 현장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지휘관의 행위를 자동으로 전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책임이 증명되는 부분에는 그 역할과 실제 결과에 상응하는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계엄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정확히 구별해 달라는 시민의 탄원입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정진팔 |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

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2026.8.14. 합참 재판부 전투통제실 현장검증 예정 보도

[2] 뉴스1 2026.8.30. 김명수·정진팔·김흥준 등 첫 공판 예정 보도

[3] MBC 2026.4.28. 국회 해제 요구 의결 뒤 합참의 계엄사 연락·병력 검토 보도

[4] 뉴스핌 2026.3.8. 강동길 징계와 항변 보도

[5] 형법 제87조: 내란

[6]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8] MBC, 2026.9.15. 재판부가 9.1.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 결과를 법정에서 설명한 보도

[9] 헌법재판소 2025.4.4. 2024헌나8 결정례: 국회 해제요구안 01:02경 가결

[10]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11] 계엄법 제11조: 계엄 해제 절차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23:22 지원 요청 원문·발신자·수신자·후속 지시
- 01:02경 국회 의결과 01:03 이후 병력 검토의 정보 전달 시각
- 현장검증조서 및 실제 출동·취소 기록